

중남미 4개국 및 나이지리아 목재포장재 수입검역요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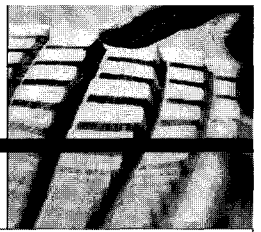
◆ 중남미 4개국 및 나이지리아의 목재포장재 수입검역요건 관련자료를 입수하여 안내해 드립니다. 관련업계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4개국 중 칠레의 목재포장재 수입검역 시행일은 2005년 6월 1일 이오니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

1. 브라질

- 대상: 브라질로 수입되는 목재포장재 및 짐깔개(Dunnage)
- 요건
 - 열처리: 목재 중심부의 최저 온도가 56℃에서 30분간 유지
 - MB 훈증소독

온도 (℃)	투입량 (g/m ³)	최소 농도(g/m ³)			
		30분	2시간	4시간	16시간
21℃	48	36	24	17	14

- ※ 21℃ 이하일 경우 온도가 5℃씩 떨어질 때마다 8g/m³를 첨가
- ※ 10℃ 이하일 경우에는 MB 훈증소독을 실시할 수 없음
- ※ 소독시간은 16시간 이상
- ※ 수출국에서 선적 15일 이내에 소독을 실시해야 함
- 소독사항을 부기한 식물위생증명서 첨부
- 면제대상 물품: 비목재포장재(플라스틱, 마분지, 섬유질 등)
- 미이행시 조치: 다음의 경우 목재포장재를 소각
 - 해충이나 해충 감염 흔적이 발견될 경우
 - 식물위생증명서 및 열처리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았을 경우
 - MB 훈증소독을 선적일 15일 이내에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
- 시행일: 2004년 1월 15일(관보게재일)



2. 콜롬비아

- 대상: 콜롬비아로 수입되거나 콜롬비아를 경유하는 화물에 사용된 목재포장재 및 짐깔개
- 관련병해충
 - 소나무재선충
 - Asia longhorned beetle (Anaplophora glabripennis)
 - 하늘소과(Cerambycidae)
 - 나무좀과(Scolytidae)
- 요건: ISPM No. 15에 따라 소독처리 실시
 - 열처리: 목재 중심부의 최소 온도가 56°C에서 30분 이상 유지
 - ※ 건열처리(KD), 화학적 방부제 가압침지(CPI) 또는 기타 처리방법이 열처리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열처리로 간주
 - MB 훈증

온도 (°C)	투입량 (g/m ³)	최소 농도(g/m ³)			
		30분	2시간	4시간	16시간
21°C이상	48	36	24	17	14
16°C이상	56	52	28	20	17
11°C이상	64	48	32	22	19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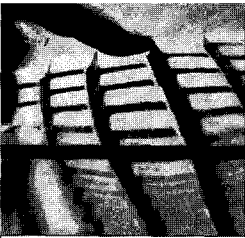
※ 최소온도가 10°C 이하일 경우 MB 훈증소독을 실시할 수 없음

※ 최소 노출시간은 24시간

- 소독처리 후 목재포장재 두개 면 이상에 ISPM No.15의 소독처리마크 표시
- 미이행시 조치
 - 수입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다음 중 한 가지 조치
 - 목재포장재 폐기
 - 화학 처리
 - 목재포장재 재수출
 - 목재포장재 보류
 - 소독처리 비용 또는 기타 조치에 대한 비용은 수입업자 부담
- 시행일: 2004년 6월 3일

3. 코스타리카

- 대상: 침엽수 또는 비침엽수 목재포장재(파렛트, 짐깔개, crating, packing block, drums, cases, load boards, pallet collars, skid 등)
- 요건: ISPM No. 15에 따라 소독처리 실시



| 식물 검역 |

- 열처리: 목재 중심부의 최소 온도가 56°C에서 30분 이상 유지
- * 건열처리(KD), 화학적 방부제 가압침지(CPI) 또는 기타 처리방법이 열처리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열처리로 간주
- MB 훈증

온도 (°C)	투입량 (g/m³)	최소 농도(g/m³)			
		30분	2시간	4시간	16시간
21°C이상	48	36	24	17	14
16°C이상	56	52	28	20	17
11°C이상	64	48	32	22	19

- * 최소온도가 10°C 이하일 경우 MB 훈증소독을 실시할 수 없음
- * 최소 노출시간은 24시간
- 소독사항(약제명, 약량, 노출시간 등)을 기재한 식물위생증명서 첨부
- 면제대상 물품
 - 합판, 파티클보드, 배향성스트랜드보드, 베니어와 같이 전부 목재산물로 제작되어 있고 아교, 열, 압력을 이용하거나 또는 이러한 방법을 혼합하여 제작한 목재포장재
 - 목재심재부, 톱밥, wood wool, 대패밥(최소 6mm 이상), 생목재를 얇게 조각낸 것과 같은 목재포장재
- 미이행시 조치
 - ISPM No.15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, 원산국으로 반송, 소독 또는 폐기 조치
- 시행일: 2004년 1월 1일

4. 칠레

- 대상

칠레로 수입 또는 칠레를 경유하는 화물의 운송에 사용된 목재포장재 중에서, 두께 5mm 이상의 침엽수 또는 비침엽수로 제작된 목재포장재(파렛트, 짐갈개, crating, drums, cases, load boards, pallet collars, skid, reel, bin 등)
- 요건
 - 두께 5mm 이상의 제재목으로 제작될 경우 수피가 제거되어야 하고, 열처리 또는 MB 훈증소독 실시
 - 열처리: 목재 중심부의 최소온도가 56°C에서 최소 30분간 유지
 - * 건열처리(KD), 화학적 방부제 가압침지(CPI)의 경우 열처리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열처리로 간주
 - MB 훈증소독



| 식물 검역 |

온도 (°C)	투입량 (g/m ³)	최소 농도(g/m ³)			
		30분	2시간	4시간	16시간
21°C이상	48	36	24	17	14
16°C이상	56	52	28	20	17
11°C이상	64	48	32	22	19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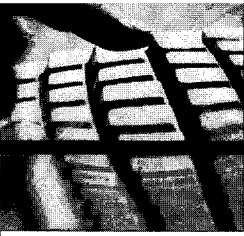
- * 최소온도가 10°C 이하일 경우 MB 훈증소독을 실시할 수 없음
- * 최소 노출시간은 16시간
- 열처리 또는 MB 훈증소독을 실시하였을 경우 소독처리를 증명할 수 있도록 ISPM No.15에 따른 소독처리마크 표지
 - 마크는 포장재의 최소 두개 면 이상에 표지
- 면제대상 물품
 - 합판, 파티클보드, 배향성스트랜드보드, 베니어와 같이 접착제, 열, 압력을 이용하여 제작된 목재포장재
 - 양조 목적의 통나무와 배럴(통나무통)
- 미이행시 조치
 - 다음의 경우에는 화물의 목재포장재 소각 또는 소독 처리
 - 목재포장재에 마크가 없는 경우
 - 목재포장재에 수피가 있는 경우
 - 목재포장재에서 해충 또는 해충 감염 흔적이 발견될 경우
- 시행일 : 2005년 6월 1일

5. 나이지리아

- 검역대상 : 나이지리아로 수입되는 모든 목재포장재
- 소독방법 : 국제기준(ISPM NO.15)에 따른 열처리 또는 훈증소독
- 증명방법 : 소독사항을 기재한 식물위생증명서 첨부
 - * ISPM No.15에 따른 소독처리마크 표지시 식물위생증명서 첨부할 필요 없음
- 시행일 : 2004. 9. 30.
- 미이행시 조치사항
 - 병해충 감염정도에 따라 1) 통관보류, 2) 포장재 폐기, 3) 훈증소독, 4) 반송
 - * 모든 비용은 수입자 부담

◆ 수입화물의 목재포장재 식물검역 2005년 6월 1일부터 실시

세계 여러나라(캐나다, 미국, 중국 등. 우리나라 포함)는 국제기준에 따라 소독처리된 목재포장재에 대하여 식물위생증명서 대신 소독처리 마크 표시를 의무화하는 추세이며, 우



| 식물 검역 |

리나라는 수입화물의 목재포장재에 대한 식물검역을 2005년 6월 1일부터 실시 예정입니다. 수출전 각 국의 목재포장재에 대한 검역규제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국제교역에 사용되는 목재포장재 규제지침

- 규제 적용 대상
 - 침엽수 목재포장재와 비침엽수 생목재 목재포장재 (짐갈개 포함)
 - 가공된 목재로 제작된 목재포장재는 적용 제외
- 요건 : MB훈증 또는 열처리를 실시하고 아래의 소독처리 증명마크 표시



- 요건 불이행시의 조치
 - : 소독, 폐기(소각, 매립, 가공 등) 또는 반입금지 조치